

< 참 조 >

##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2년 6월 8일
  - 회부일자 : 1992년 6월 8일
3. 개 정 이 유
  - 가.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위치가 새로운 지번에 의하여 변경되고,
  - 나. 공중위생법 및 음용수의 수질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 상위법규가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규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4. 주 요 골 자
  - 가.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지번변경  
송정동 329-1번지 → 140-50번지로
  - 나. 음용수의 수질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검사항목 추가.  
세레늄,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말라티온, 페니트로티온 (1항목당 수수료 : 4,000원)

다. 공중위생법 개정으로 공중이용시설 정밀검사 항목추가.

부유부진(20,000원), 이산화탄소(4,000원), 일산화탄소(4,000원), 온도(1,100원), 상대습도(1,100원), 기류(1,100원), 조명(1,100원)

## 5. 검토 의견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가.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의 지번이 공단내 사무실 부지로 묶여 있다가 공단사무소 등 5개 사무실 지번이 분할되어 지번이 변경되고,

나. 음용수의 수질기준 등에 관한 규칙(보건사회부령 제 87호 91. 7. 4외 개정으로 세레늄,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말라티온, 페니트로피온이 검사항목에 추가되어 수수료를 각각 4,000원씩 받게 되었으며,

다. 공중위생법(90. 1. 13)과 공중위생법 시행규칙(90. 12. 27외 개정으로 공중이용시설 위생검사 항목이 추가되어 부유부진(5개소기준 20,000원), 이산화탄소(4,000원), 일산화탄소(4,000원), 온도(1,100원), 상대습도(1,100원), 기류(1,100원), 조명(1,100원) 등의 수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은 보사부기준에 의한 전국공통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